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00호
2. 발 의 자 : 서상열 의원
3. 발의일자 : 2024년 8월 12일
4.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II. 제안이유

-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 외 학교체육시설이 주민에게 개방되고, 지역에 필요한 체육시설로 기능하기를 염원하고 있지만 개방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이에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시에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교육감이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기 타

○ 입법예고(2024. 8. 20. ~ 8. 24.)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12일 서상열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00호로 발의되어 202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시 학교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의 안전 확보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체육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의사결정이 학교장에게 있고, 학교장은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과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 등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도모하고자 연 100시간 이상 개방한 학교 중 누적 개방시간에 따라 구간별 정액 지급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1] 개방 시간 구간별 인센티브 지원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개방 시간	학교수 (A)	학교별 지원금액 (B)	지원금액 총액 (A × B)
1구간	801시간 이상	58	32,000	1,856,000
2구간	601시간 이상 800시간 이하	46	26,000	1,196,000
3구간	401시간 이상 600시간 이하	54	20,000	1,080,000
4구간	201시간 이상 400시간 이하	107	17,400	1,861,800
5구간	100시간 이상 200시간 이하	89	14,800	1,317,200
계		354		7,311,000

○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7년 이후의 개방 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2020~2021)에 개방율이 급감하였다가 점차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23년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 구간인 100시간 이상을 개방한 학교 비율이 37.3%에 불과하여 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최근 5년간 학교 체육시설 개방실적¹⁾

(단위: 천원)

구 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학교수 (공립)	비율	학교수 (공립)	비율	학교수 (공사립)	비율	학교수 (공사립)	비율	학교수 (공사립)	비율	학교수 (공사립)	비율	
구 간	전체	964		968		1,345		1,344		1,347		1,346	
	50시간 미만	56	5.8%	114	11.8%	191	14.2%	25	1.9%	152	11.3%	54	4.0%
	100시간 미만	25	2.6%	35	3.6%	50	3.7%	32	2.4%	54	4.0%	35	2.6%
	200시간 미만	110	11.4%	100	10.3%	69	5.1%	31	2.3%	97	7.2%	103	7.7%
	200시간 이상	517	53.6%	548	56.6%	79	5.9%	55	4.1%	331	24.6%	398	29.6%
개 방 륜	미개방	256	26.6%	171	17.7%	956	71.1%	1,201	89.4%	713	52.9%	786	56.2%
	50시간 이상	652	67.6%	683	70.6%	198	14.7%	118	8.8%	482	35.8%	536	39.8%

1) 2023년(2022학년도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 결과보고 (교육재정과, 2024.2.)

* 2023학년도분은 별도 수치 파악

- 또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 시 전문 관리 요원의 부족으로 체육시설 보안 및 관리의 어려움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스쿨매니저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 스쿨매니저 사업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²⁾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이에 따라 스쿨매니저가 학교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스쿨매니저 사업은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자치구 내 3개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 바, 현재 서울시내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자치구는 10곳에 불과하여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과 각급학교, 자치구 등이 상호간의 소통을 통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은 교육감에게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과 추가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한 바, 이를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간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생각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개정조례안 제5조는 조의 제목을 ‘지원’에서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이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2)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개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경우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의 장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현행 제5조은 제1항과 제2항을 통해 각급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대상, 재정적 지원에 따른 예산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안 제3항은 학교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견 수렴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조의 제목은 그 조에 규정할 주제를 분명히 밝히고 주제를 포괄하도록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을 ‘지원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안 제5조의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은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의 자원 공유를 통한 협력이 강조되는 부분임으로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민편의를 높이면서도 학교 역시 발전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바, 교육감에게 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989, 2024.8.21.).³⁾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성윤(2180-8266)

3)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행정관리담당관-8989, 2024.8.21.)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3호, 2024. 2. 6., 일부개정]

-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